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복기왕의원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1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염태영 · 복기왕 · 김종민  
김영환 · 손명수 · 이건태  
이강일 · 문진석 · 김우영  
김남희 · 김승원 · 한병도  
박용갑 · 박수현 · 최혁진  
김현정 · 혀종식 · 김원이  
강준현 · 김영배 · 이광희  
서영교 · 김준혁 · 박 정  
김태년 · 이주희 · 김 윤  
이용선 · 송재봉 · 이수진  
박범계 · 염태영 · 이성윤  
최민희 · 한창민 · 황운하  
윤종군 · 맹성규 · 어기구  
장종태 · 이정문 · 차규근  
박덕흠 · 이재관 · 강명구  
조승래 · 박지원 · 황명선  
이연희 · 황정아 · 장철민  
임호선 · 박정현 의원  
(5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치 · 경제 · 행정 · 문화 등 국가의 핵심 기능

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도시 과밀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 청년층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출생 · 고령화 심화와 함께 사회 · 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으나,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 비용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력 · 의료 · 문화시설 등 각종 자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되,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바.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및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청 소관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부칙 제6조).

자.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9조 및 부칙 제11조).

차. 이 법 시행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및 제4조).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수도”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주요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주요 국가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

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수도가 수도권과 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균형·행정수도 종합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①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경제·과학·문화·교육·예술·보건·복지 등 부문별 행정수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행정수도 종합발전시책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행정수도 종합발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국가균형·행정수도발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0조의 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 및 제22조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제32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3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청장(이하 “행정수도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수도의 명칭 등) 행정수도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수도를 조성하여야 한다.

1. 헌법의 가치를 상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입법 및 행정 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2.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실현·확산하는 탄소중립도시
3. 편리하고 안전하며 포용력을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예술의 창의적 발현과 혁신을 선도하는 문화예술도시
5. 첨단과학기술이 구현 및 적용되는 스마트 미래도시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0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예정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제한지역 · 제한내용 · 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제한지역 · 제한내용 · 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

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①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지구·지역의 지정 목적이 없어지거나 그 구역·지구·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 예정지역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 환경성, 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수도건설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를 말한다)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송부 및 열람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할 때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①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승인된 구역·지역·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 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수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수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수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일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2. 거주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의 그 토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2008년 2월 29일 이후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의 지정 ·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한 허가 · 승인 등을 받아(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행정수도청장에게, 주변지역 안에서는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예정지역등의 지정 ·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지역: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2. 주변지역: 행정수도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주요 국가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 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전계획 중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5. 그 밖에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주요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이전계획)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이전 대상 주요 국가기관등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2.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안보실
  3.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처
  4.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5. 기타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건립 시 시민 접근성, 안전성, 효율성, 국가안보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18조(국회 등의 이전계획)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등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회의사당
2. 국회의원회관
3.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국회사무처
4.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5. 「국회법」 제22조의2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6. 「국회법」 제22조의3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
7.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기록원
8.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

9. 기타 국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회 내 부속 시설 등

② 국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립 시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대한민국 국권회복, 민주항쟁, 시민권 등의 가치를 표상하는 국민주권구역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국민주권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권회복 및 민주항쟁의 역사와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을 표현하는 기록관 및 박물관

2. 민주주의적 참정권을 구현하는 소통을 위한 시민광장

④ 기타 국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을 따른다.

제19조(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행정수도청장은 예정지역내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수도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이 입지한 지역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행정수도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행정수도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행정수도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
    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수도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⑦ 행정수도청장은 제6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그 밖에 특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수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행정수도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수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수도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수도청장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행정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청장”으로 본다.

④ 행정수도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수도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행정수도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행정수도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수도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수도청장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행정수도청장 및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 할 수 있다.

⑫ 행정수도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⑬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 수도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수도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행정수도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⑭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광역

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행정수도건설사업 등

제2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수도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수도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간사업자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제2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개요
2. 행정수도 건설의 비전과 목표
3.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4. 이전대상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배치방향
5.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6.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8. 재원조달 방안

9.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수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행정수도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수도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수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예정지 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행정  
수도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5. 교통처리계획
6. 도시문화계획
7. 경관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2.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3. 재원조달계획
14.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 행정수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 제5항을 준용한다.
- ⑥ 행정수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행정수도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행정수도청장은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

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3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수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수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정수도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에는 제23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⑤ 행정수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5조에서 정하는 지역·지구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다.

- 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행정수도청장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

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2.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1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7.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
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허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  
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7.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② 행정수도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수도청장은 제71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9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수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행정수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원형지개발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 제29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수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행정수도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행정수도청장이 제2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수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수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수도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 행정수도청장 또는 제6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23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4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9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수도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50조, 제58

조부터 제66조까지, 제71조 및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장 추진기구

제3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수도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3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주요 국가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특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

요 사항

12. 제71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3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수도청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3. 세종특별자치시장

4.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 1명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5.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

리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수도청장이 된다.

제35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6조(소위원회)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설계에 관한 사항,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요 국가기관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0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4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행정수도청의 설치 등) ①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이하 “행정  
수도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행정수도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수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행정수도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행정수도청장의 업무) 행정수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2. 제19조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지정
3. 제20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4.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5.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6.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7. 제28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8. 제29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9. 제30조에 따른 준공검사
10. 제49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의 관리 · 운용
11. 제59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12. 제66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 · 군 관리계획의 수립
13. 위원회 사무의 지원
14.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총괄 · 조정
15. 행정수도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수도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수도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수도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자료 ·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 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 ·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수도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수도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47조(여론의 수렴) 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수도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다.

제4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행정수도청장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 제6장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제49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채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행정수도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행정수도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행정수도청장은 회계를 관리·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예정지역내로 이전하는 주요 헌법기관 · 중앙행정기관 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주요 헌법기관 · 중앙행정기관 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
4. 제54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자 및 응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예정지역내로 입지할 주요 헌법기관 ·

중앙행정기관 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

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4. 제5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59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7. 제60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8.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용자

9. 제75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10. 제76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1. 제77조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

원에 필요한 비용

12. 제78조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  
용

13. 그 밖에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의 지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2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청이 조성·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행정수도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행정수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행정수도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56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8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건설사

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 행정수도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행정수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관련 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행정수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행정수도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수도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수도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62조(손실보상) ①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수도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63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수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수도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64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66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청장”으로 본다.

② 행정수도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수도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행정수도청에 행정수도 도시 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수도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행정수도청”으로 본다.

④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완료를 공고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수도청장”으로 본다.

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행정 수도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행정수도청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행정수도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수도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청”으로 본다.

② 행정수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수도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수도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8조(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개

정에 관한 행정수도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의 미관·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수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9조(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수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행정수도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자체 없이 행정수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 안에서 토지등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수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행정수도청장과의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수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행정수도청장이 수립한다.

② 행정수도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행정수도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행정수도청장”으로 본다.

제72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

관의 장으로 본다.

제7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  
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계획권역 해  
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  
수도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1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건  
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청장이 건설공사현  
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제7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  
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  
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  
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7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행정수도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행정수도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제77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행정수도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수도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행정수도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행정수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행정수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행정수도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⑩ 행정수도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9조(청문) 행정수도청장은 제78조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수도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관리청으로 본다.

1. 도로·도랑 등: 국토교통부장관
2. 하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그 밖의 재산: 재정경제부장관

제82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 사람

제83조(권한의 위임 ·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수도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41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울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및 제70조  
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허가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  
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절차, 그 밖의 행정기  
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는 이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수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33조에 따른 행정수도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건설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건설청 소관 사무는 제43조의 행정수도청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설청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은 이법에 따른 행정수도청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본다.
- 제7조(예정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정지역 등(제15조에 따라 해제된 지역은 제외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법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본다.
- 제8조(주요 국가기관등의 이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은 제16조에 따른 주요 국가기관등의 이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주요 국가기관등의 이전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은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수립한 개발계획은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은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0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사항은 제25조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12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71조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본다.

제13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존에 수용되거나 사용중인 토지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공급계획에 대한 건설청장의 승인이 있었던 경우 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급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선수금수령에 대한 건설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 법 제29조에 따른 선수금수령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49)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사업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4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별표 제115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2조”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6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4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사업”으로 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따른 행정수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을 각각 “행정수도등”으로 한다.

⑩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자목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각각 “행정수도”로,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주요 국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행정기관등”을 “주요 국가기관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수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을 각각 “행정수도등”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른 행정수도(이하 “행정수도”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7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⑮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행정수도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3조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각각 “행정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44조에 따라 행정수도건설청장(이하 “행정수도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2

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2항 중 “건설청장”을 각각 “행정수도청장”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52조제2항 관련)

1.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2.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3.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4.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5.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7.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8.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9.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119특수구조단
10.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종합체육시설
11.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환승주차장
12.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창의진로교육원
13.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평생교육원
14.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지식산업센터
15.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과학문화센터
16. 제44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17.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행복아파트
18.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복지관